경기동부상공회의소
"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"
우472-010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405호 (금곡동, 다남프라자) 담당 : 전진헌 차장
TEL : 031) 592-3039 FAX : 031) 591-3054 홈페이지 http://gecci.korcham.net

문서번호 : 경동상 제21-045호
시행일자 : 2021. 6. 7.
수 신 : 회원업체 대표
참 조 : 총무부(과)장
제 목 : **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제7대 (특별)의원 선거 및 후보자등록 안내**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상공회의소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창립한 이래 법정경제단체로써 지역 상공업 및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,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상공회의소를 대표하는 의원 선출을 위해 상공회의소법 및 정관에 의거 「**제7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**」를 붙임의 선거일정에 따라 실시합니다.

3. 지역 유일의 법정경제단체인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의원으로 입후보하시어 상공회의소 및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며,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대표(임원)께서는 **후보자 등록기간 6월 25일(금)~ 6월 29일(화)까지 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서류.
- 제7대 (특별)의원 선거 일정 1부.
- 제7대 (특별)의원 선거 안내 1부.
- 후보등록신청서 및 추천장 양식 각 1부.

※ 상기 붙임서류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홈페이지(http://gecci.korcham.net) -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성 희 승

경기동부상공회의소
제7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 일정

일자	주요사항
6/22(화)	**선거일 공고**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
6/24(목)	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선거인명부 위원회 송부 **체납회비 납부시한 만료**
6/25(금)	선거인명부 열람 개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개시 **후보자등록 개시**
6/29(화)	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**후보자등록 마감**
6/30(수)	후보자등록 공고 투표소 공고 투표안내문 및 위임장 발송
7/1(목)	선거인명부 확정
7/4(일)	개표소 공고
7/6(화)	후보자일람표 게시
7/7(수)	투표소 설비 개표소 설비
7/8(목)	**선거일 (투표 및 개표)**
7/9(금)	당선인 공고및 통지 의원총회 소집통지 회장후보자 등록 안내
7/13(화)	회장후보자 등록 마감
7/22(목)	**의원총회 (임원선출)**

제7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 안내

□ **제7대 의원 및 특별의원 정원 및 임기**

가. 의원 정원 (정관 제35조)

1) 의　　원 : 100인

2) 특별의원 : 5인

나. 7대 의원 임기 : 3년 (2021. 7. 22 ~ 2024. 7. 21)

□ **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규정**

가. 정관 제13조 (*회비납부 금액에 따른 차등 부여)

- 제13 조(선거권) ①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(1개 사업연도를 2등분한 각 기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직전 2개 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회원 1인이 가지는 선거권은 25개를 초과할 수 없다.
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날까지 제15조 제5항에 따라 추가로 회비를 낸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.
  ③ 회원이 제15조 제4항에 따라 현 의원임기일로부터 차기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날까지 낸 특별회비는 제1항에 따른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.
  ④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이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.

나. 정관 제63조 2항 (*회비 미납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지, 납부기한 6월 24일)

-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1기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. 다만, 의원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가지며, 의원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.

다.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제9조 1항,2항 (*선거권 수 별표 참조)

- 회원은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며, 회원이 가지는 선거권의 수는 별표와 같다. 특별회원은 1개의 특별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.

□ **제7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**

가. 등록기간 : 2021. 6. 25(금) ~ 6. 29(화) / 5일간 (*토, 일 포함 / 오전 9시~ 오후 5시)

나. 등록서류

1)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(*인감도장 날인,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)

2) 추천장 5부 (*중복추천 가능,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추천)

3) 사업자등록증사본 (*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 1부

4) 인감증명서 (*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 1부

5) 사진(반명함판) 1매

□ **의원 및 특별의원 당선**

가. 정원보다 후보자 등록이 많을 경우 - 의원선거 실시 후 당선인 공고

나. 정원보다 후보자 등록이 적을 경우 - 무투표 당선

[별표] 선거규정 제9조 제1항 관련

회원의 선거권 수

회비금액	선거권 수	회비금액	선거권 수
50만원 이하	1	800만원 이하	13
100만원 이하	2	900만원 이하	14
150만원 이하	3	1,000만원 이하	15
200만원 이하	4	2,000만원 이하	16
250만원 이하	5	3,000만원 이하	17
300만원 이하	6	4,000만원 이하	18
350만원 이하	7	5,000만원 이하	19
400만원 이하	8	6,000만원 이하	20
450만원 이하	9	7,000만원 이하	21
500만원 이하	10	8,000만원 이하	22
600만원 이하	11	9,000만원 이하	23
700만원 이하	12	9,000만원 초과	24

※ 예시) 최근 1년간(2기) 회비납부 금액 : 50만원 (임의가입회원 기준)
최근 3년간 특별회비납부 금액 : 300만원
합계 금액 : 350만원 ☞ 7표 (선거권 수)